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18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박대출의원안)	2

I. 개요

1.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01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5. 19.
- (3) 회 부 일 : 2026. 5.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박대출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혼인세액공제(제92조) ☐ 공제대상: 거주자 ☐ 공제금액: 50만원, 1회 한정 ☐ 적용기한: <u>2026년 12월 31일</u>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9년 12월 31일</u> 이전 혼인신고자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박대출의원안 2026. 5. 19. 발의(의안번호 19018)

☐ 현행법은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생애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혼인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2024년 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것으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 개정안들은 이러한 혼인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최근 그 건수가 상승하였으나 2025년 기준 24만 326건으로 여전히 2018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8년 5.0건에서 2025년 4.7건으로 약 6% 감소하였음.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천명당 건)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혼인건수	257,622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222,412	240,326
조혼인율	5.0	4.7	4.2	3.8	3.7	3.8	4.4	4.7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자료: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 KOSIS)

또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사이에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혼인률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¹⁾은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였으나 2025년 기준 0.80명으로 여전히 1명 미만이라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0.80

자료: 국가데이터처

1)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이에 개정안은 혼인신고과 관련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혼인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혼인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데이터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혼인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2022년)]

(단위: %)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29.7	35.4	22.0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11.0	13.4	7.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6.6	4.7	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10.7	9.3	12.5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1.6	11.3	11.9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0.8	1.1	0.6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9.6	8.4	11.2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1.0	0.6	1.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7	15.2	23.3

자료: 「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지표누리)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최근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이 상승 추세라는 점에서 동 조세 특례제도를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2025년 기준 혼인건수는 24만 326건이며, 조혼인

율은 4.7건으로, 2018년에 비해서는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 비해 혼인건수의 경우 약 24.8% 증가하였고, 조혼인율 역시 약 23.7%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상승 추세임.

이처럼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이 최근 상승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혼인신고 결정 여부에 있어 혼인세액공제보다는 주택 대출 정책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금융제도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나 자산 요건을 1인 가구의 1.5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권고²⁾한 바 있으나, 2026년 6월 기준으로 아직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

실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이나 장기·고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상한 기준이 7,000만원인 반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8,500만원 기준을 적용받아 불리한 측면이 있음.

이처럼 혼인신고 여부에 있어서 주택 대출 정책 등이 큰 영향을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5.12.26.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가 혼인신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세 특례제도의 연장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혼인신고세액공제가 저출생 문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상 혼인이 출생의 전단계로 인식되기는 하나, 혼인과 출산을 독립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는 청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5%)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2018년	2020년	2022년
전체	30.5	32.0	34.7
청년	46.4	50.5	53.5

자료: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국가데이터처, 2023. 8. 28.

또한, 청년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³⁾, 고용·소득 불안정과 아울러 올로족, 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의 확산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 관련 공제 금액의 인상 및 적용기한의 연장으로는 최근의 비혼·저출생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3) 청년(15세~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46.7% → 2018년 47.1% → 2019년 47.8% → 2020년 46.4 → 2021년 47.9% → 2022년 49.8% → 2023년 49.4%로 나타나고 있음.(국가데이터처,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상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혼을 망설임 이유 비중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사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결혼비용	46.4	65.8	53.2	51.4	41.9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12.5	9.1	8.6	13.9	12.6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18.8	9.2	16.4	12.9	25.2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13.7	9.1	11.8	12.3	18.2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7.5	6.3	8.5	9.5	1.2
기타	1.1	0.6	1.5	-	0.8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p.59

□ 한편 예산정책처는 박대출의원안에 따라 혼인신고세액공제를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994억원 등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총 2,982억원(연평균 9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8~2030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박대출의원안	△994	△994	△994	△2,982	△9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